

##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2조 규정에”를 “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장의”를 “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
2.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
3. 회의진행 보좌
4. 교육위원 활동 보좌
5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
6. 청원 및 진정처리
7. 회의록 작성·보관·발간 및 열람
8.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
9.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에 관한 사항
10.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
11.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
12. 소관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
13. 경비·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
14.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
15.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

제4조 중 “15명”을 “13명”으로, “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”를 “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록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
②(규정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 규정('96.2.29 규정 제4호)은 이를 폐지한다.

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명	기 경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(이하 “의사국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직무)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제3조(조직)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<u>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과에 의사계와 의안계를 두되, 의사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, 의안계장은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.....</p> <p>.....제2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2조(직무) .....<u>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의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3조(조직) ①현행과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<u>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1.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.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사무 3. 회의진행 보좌 4. 교육위원 활동 보좌 5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6. 청원 및 진정처리 7. 회의록 작성·보관·발간 및 열람 8. 교육위원회 활동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9. 교육위원 재산등록 등 신분에 관한 사항 10.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11. 문서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. 소관예산의 편성·집행 및 결산</p>

연 정	기 정 안
	<u>13. 경비·방첨 및 회의장 질서 유지</u> <u>14. 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</u> <u>15.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</u>
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 의사국에 두는 사무 직원의 정수는 <u>15명</u> 으로 하며, 그 내역은 <u>별표와 같다.</u>	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 ..... ..... <u>13명</u> ....., <u>직급별 정원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.</u>
제5조(직원의 파견 요청) 생략 <u>(시설)</u>	제5조(직원의 파견 요청) 현행과 같음 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	부 록
	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(규정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 도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사무분장규정('96.2. 29 규정 제4호)은 이를 폐지한다.